역량성취도관리규정 5-1-54

규정번호 5-1-54
제정일자 2020.2.17
최근개정 2024.7.24
개정차수 3차 개정
관리부서 교육과정혁신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역량성취도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역량 및 직무기반 교육과정 개선 및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중심의 역량 및 직무기반 교육과정”이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의 완성도가 높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의 교육목표 및 산업현장 요구를 반영한 핵심역량, NCS 기반 등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역량성취도”란 직무역량, 핵심역량(직업기초능력 포함)을 함양하는 교과, 비교과 등의 운영 성과를 합산하여 산출한 것을 말한다.

제3조(주관부서 및 관리부서) ① 교육과정혁신팀은 역량성취도 평가 계획 수립부터 역량성취도 평가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개정 2021.05.10., 2022.08.08.,2024.7.24)

② 교육과정혁신팀(전공, 교양) 및 학과(전공), 기타 관련 부서는 평가지표(또는 기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개선해 나가야 한다.(개정 2022.08.08.,2024.7.24)

제4조(역량성취도위원회) ① 역량성취도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역량성취도위원회를 둔다.

②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21.05.10.,2022.08.08.,2024.7.24)
2. 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교직원 및 외부위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05.10.)
3.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05.10.)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실무자를 간사로 둔다.

③ 위원장 및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7.24.)
3.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단, 필요에 따라서 서면결의 할 수 있다.
2. 회의의 내용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회의록 작성

1.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05.10.,2022.08.08., 2024.7.24)
2.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직무역량, 핵심역량 관련 계획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2. 역량성취도 평가 관련 규정, 지침에 관한 사항
3. 역량성취도 평가 결과의 심의, 활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역량성취도 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1.05.10., 2022.08.08.,2024.7.24)

제5조(평가절차) 역량성취도 평가는 평가계획 수립, 평가 실시·분석, 평가결과 공람·활용 등의 절차로 진행한다.

제6조(평가운영) 주관부서에서는 역량성취도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7조(평가영역) 역량성취도 평가는 직무역량, 핵심역량(직업기초능력 포함) 전반의 성취도를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핵심역량(직업기초능력 포함)” 평가는 우리 대학의 인재상에 기반하여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도출된 교과목 및 비교과 프로그램의 성취도를 평가한다.
2. “직무역량(전공능력)” 평가는 현장중심의 역량 및 직무기반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도출된 전공 교과목의 성취도를 평가한다.

제8조(평가대상) 역량성취도 평가는 우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9조(활용) ① 학생의 역량성취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직무역량 및 핵심역량 등을 성취하였는지 점검하여 역량성취 수준의 품질관리를 지원하며 학생별 역량성취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학생이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과 및 관련 부서에서는 학생 개인의 직무별 역량성취도 평가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과의 역량성취도 평가결과는 교육과정 및 진로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④ 대학 전체의 역량성취도 평가결과는 우리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 대학 특성화 정책 반영, 교육 및 행정체제 개선 등 대학차원의 교육품질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10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역량성취도 관리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4조제2항, 제4조제5항제1호, 제4조제5항제4호)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제1호, 제4조제3항제2호, 제4조제5항제1호, 제4조제6항제4호)